

[사 건 명] 행심 2013-5~6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등 2명

□ 피청구인 : ○○중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4. 청구인 ○○○ 등에게 내린 『전학』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 가. 2013. 3.16.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셀카대회를 하자고 문자를 보내고 답장이 없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청구외 유태규와 청구인 ○○○(행심 2013-6호로 청구함. 이하 청구인 ○○○이라 함)에게 부탁하여 피해학생의 사진을 카카오토리에 게재하였다.
- 나. 같은날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 청구인들의 행위에 피해학생은 충격을 받고 카카오톡으로 청구인 ○○○에게 ‘시발년들아, 사람얼굴 올려서 지랄하면 좋냐? 칼로 눈 도려내 줄까? 시발새끼들아 쌍수하면 니들한테 피해되냐? 눈 썩냐? 시발것들아 학교가서 칼로 손목긋는거 보고싶구나? 야 이거 경찰서 신고할 수 있어 피간새끼랑 캡쳐한 새끼도, ○○○아 칼로 니목 잘라줄까?’ 등의 심한 욕설을 하였다.
- 다. 서로간의 감정이 심하게 나빠지자 청구인은 피해학생에게 청구인 ○○○이 맡긴 신발을 가지고 3.17. 1시까지 ○○공원으로 나오라고 하고, 이 사실을 청구외인들에게 말하여 모이게 하였다.

- 라. 3.17. 전날 카카오토티에서 피해학생이 욕한 것에 대해 이야기 하는 도중 피해학생이 울자 청구인 ○○○이 “재 운다”, “질질 찐다”라고 놀리며, “꼬우면 한 대 치든가”라고 말하자, 피해학생이 청구인 ○○○의 목과 머리를 때렸고, 청구인 ○○○은 주변 아이들에게 “복수는 몇 대?”라고 묻고 40대를 때리라는 얘기가 나오자 청구인 ○○○은 이 날 피해학생을 11대를 폭행하였고, 이 후 피해학생으로부터 돈 1만원을 받아 노래방에 가서 놀다가 귀가하였다.
- 마. 2013. 3.18. 학교수업 후 후문 앞 ○○공원에서 가·피해학생 등 8명이 모였으며, 이 자리에서 청구인 ○○○이 피해학생을 29대 때리며 폭행하였다.
- 바. 2013. 3.19.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데리고 나가려다가 피해학생이 거부하고 자리를 피하여 실패하였다.
- 사. 2013. 3.26. 및 4. 2. 2회에 걸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청구인들에게 전학 조치하였다.
- 아. 2013. 4. 4. 청구인에게 자치위원회 심의결정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3. 5.13. 인천시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고, 2013. 5.16. 인천시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징계조정 결정서를 통보받은 청구인은 2013. 5. 31. 이 사건 2013. 4. 4. 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하고 출석정지 이하로 재결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1. 가해학생들을 2013.3.20.(수) 2교시 수업 중에 학생부장선생님이 불러내어, 중식시간(약 15분) 및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17시 경까지 조사를 하였는데 이는 학습권 침해이고, 진술서 작성 당시 강압적으로

작성하게 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전학처분을 사건의 피해학생의 상태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여, 진실과 객관적인 증거 조사를 통해 판단하지 않았다.

가. 청구인이 학교에 제출한 진술서 상에 2013.3.16 20:30경에 셀카 회를 했을 당시 청구인은 피해학생으로부터 직접적인 승낙은 받지 못했으나 '사진을 올려도 되지'라고 분명히 물었고 무응답이 동의라고 생각하여 청구인 ○○○에게 사진을 올리게 했으며, 청구인 ○○○은 피해학생이 승낙한 것으로 알고 사진을 올린 것인데, 피해학생이 '목을 따줄까 보다' 하는 등의 입에 담거나 표현하기도 어려운 욕설을 하는 등 청구인도 사이버 폭력을 당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 2013.3.17. ○○공원에서 화해를 목적을 만났고, 피해학생이 먼저 청구인 ○○○의 목을 강하게 1회 폭행 했으며, 청구인 ○○○은 피해학생에게 맞은 것보다 낮은 강도로 패딩점퍼 위의 가방과 등부분을 툭툭 친 것으로 '폭행'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

다. 또한 청구인이 노래방을 가자고 했으나 노래방비가 4,000원 부족해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으나 피해학생이 먼저 돈10,000원이 있다고 하였고, 갚는 조건으로 노래방비를 내어 달라고 했던 것이다.

라. 이러한 사실을 목살 하고, '40대의 폭행', '금품갈취', '피해학생이 현재 병원에 입원 하고 심리 치료를 받는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전학이라는 극단적인 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과중한 처분이다.

3. 가해학생들의 반성과 사과는 목살 되고 선도 가능성도 배제되었고, 사전 분쟁 조정에 대한 안내도 받지 못해 조정기회를 박탈당했으며,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과도한 보상금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를 하지 못한 것이었다. 피해학생 측과 연락도 안 되는 상황에서, 피해학생 측이 경찰서에 신고하여 합의하기가 힘든 상황까지 만들었지만, 피해학생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합의의 의사는 가지고 있음을 자치위원회나 징계

위원회 회의에서 진술하였으나 인용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자치위원회의 회의개최(1차(3.26.), 2차(4.2.))를 서면통보 방식이 아니라 구두로 간략하게 시간, 장소만 알려준 것은 부당하고, 피해학생의 입장만을 강조하여 청구인들의 얘기는 들으려 하지 않았으며, 피해학생의 사이버공간상에서 한 욕설과 청구인 ○○○에 가한 폭행 등은 자치위원회에서는 피해학생이라 하여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5. '피해학생이 우울증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알고 있으면서 폭행과 따돌림을 하였다'라고 하나, 청구인은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지나가는 말로 '서영이가 가끔 우울해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뿐이고, 청구인 ○○○은 자치위 참석으로 알게 된 사실임에도 피청구인은 마치 청구인들이 사전에 알고 있음에도 학교폭력을 행사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6. 피청구인은 실제 사건 내용과는 다르게 '집단폭행'이라고 하는 기간을 카카오토티에서 셀카콘테스트를 한 2013.3.16.(토)부터 3.19.(화)까지 4일간으로 조사하였으나, 2013.3.16.에는 셀카대회가 있던 날이어서 만나지도 않았으며, 2013.3.19.에는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만나러 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학생을 때리려고 데려가는 중이었다는 피해학생 어머니 주장만을 그대로 인정 한 것은 부당하다.
7. 피청구인은 자치위원회 참석 이전에 이미 이 사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하고 있지만, 2013.3.20. 가해학생의 학부모들을 불러놓고 '청구인이 카톡으로 사건을 만들었고 피해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였다'라고만 안내 받았을 뿐이고,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주관적인 판단으로 청구인의 부모에게 모든 행위의 잘못을 따져 물었으며, 사건 내용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써 달라 하여 '청구인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작성한 바가 있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 ○○○의 부모에게 '12명이 피해학생을 괴롭혔고 40대를 때렸다'라는 사전 안내만 하였고, 그 외의 사실은 청구인 ○○○에게 들었다.
8. 청구인은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의 기록에 의하면 '친구들의 문제에 관심이 많고 조정하는 능력이 우수하여 친구들의 갈등을 잘 조율하는 아

이'이며, 온라인상에서 문제가 커진 것에 대하여 「화해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었다.

9. 피청구인은 가해학생들의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이 명백하다고 하였지만, 노래방도 피해학생이 자발적으로 이동하였고, 노래방비도 먼저 수중에 돈이 있다하여 빌린 것이지 금품을 갈취 한 것으로 표현하여 범법자로 만든 것은 부당하며, 학부모회가 있는 날에는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만나러 갔을 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청구인 등이 폭행을 가하기 위한 연장선으로 해석한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10.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이 반성하고 있으나 부모들의 화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하였지만, 견해차이로 시일이 길어진 것뿐이고, 피해학생이 제기한 재판에서 법원의 중재로 화해조정을 통해 합의 하려 하였다. (7/4, 7/11)
11. 사안조사 당시 인권침해적인 행동은 학생부장교사는 “진술서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강제로 전학갈 수 있으니 제대로 써라.”라고 했고, 질문이 있어 손을 들면, “이 새끼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나?”하면서 질문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으며, 가해학생들이 당한 폭행에는 “너네는 집단폭행이어서 쌍방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12.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에는 학교폭력법시행령 제19조에 대하여 청구인의 처분을 논의하고 심의한 내용이 없다.
13. 학교징계조정위원회는 제대로 심도있게 조사 및 객관적인 측면에서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피청구인의 주장만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치위원회 회의결과 청구인에게 내린 조치는 전학 처분에 대하여 취소하고 출석정지 이하로 재결해야 한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인은 강압적이고 비인격적인 조사과정과,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가. 2013.3.20.(수) 가해학생들의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언사는 전혀 없었고, 학생지원부장은 진술서를 작성하는 학생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을 뿐이었다. 대부분의 학생이 4교시가 시작 될 무렵 작성을 완료하였고, 점심시간 중반쯤 한명씩 불러 진술서의 내용에 대해 확인 한 후 종례와 청소를 마치고 나서 다시 모일 것을 안내하면서 차례로 교실로 보냈다.

나. 종례 후 모인 학생들에게 '이 사안에 대해 주변의 친구들에게 말하지 말 것과 귀가 하면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을 훈화하고 귀가시켰다.

다. 또한 학습권보장을 위해 청구인의 수업 결손 부분의 학습자료를 제공하였다.

2. 청구인은 지속적 · 고의적, 심각성에 두고 진실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한 처분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가. 12명의 가해학생들의 진술 내용과 2013.3.16.(토)~3.17.(일) 2일간의 카톡 내용을 살펴 본 결과, 3.17.(일), 3.18.(월)의 폭력 장소에 가해학생들이 만난 것은 화해가 목적이기 보다는 신발을 돌려받는 것과 카톡 내용에 대한 보복 또는 위협을 목적으로 만난 것이다.

나. 또한 사전(3.16.)에 폭력적인 생각과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계획적으로 여럿이 모인 첫날(3.17)에 피해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학생을 유인하여 노래방비를 내도록 한 것이다.

다. 둘째 날(3.18)에도 피해학생에게 쪽지를 전달하여 방과 후에 나오도록 유인하고 여럿이 모인 곳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라. 셋째 날(3.19)에도 피해학생을 불러내었으나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나타나 실패하자 인근 초등학교로 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명의 학생을 따돌림하고 집단적으로 괴롭히면서 신체적 폭력과 금품을 갈취한 행동으로써 마땅히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3. 분쟁조정을 위하여 피청구인 등이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

으나,

가. 가해학생측의 적극적인 사과 의사를 피해학생에게 여러 번 전하였으나, 피해학생 측이 강하게 반대하여 만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위해 자치위원회(3.26)에서 양측을 만나게 해 주었다.

나. 그러나 1주일 후에 2차 회의(4.2)때까지 피·가해학생 양측 대화의 진전이 전혀 없었고 경찰서에서의 중재가 실패한 원인을 '피해학생 측의 요구가 너무 커서'라고 답변하여 합의가 어려웠음을 스스로 인정하였기에 부득이하게 전학 조치를 취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부모가 사안 해결을 위한 피해학생 부모와의 진실한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전에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한 피청구인은 사안 설명을 위해 가해 학생들의 모든 학부모에게 내교 상담을 요청했고, 3.20.(수)~3.22.(금) 3일간 학생지원부에 찾아온 12명의 가해학생들의 부모님에게 사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으며,

나. 이 과정에서 청구인의 어머니는 이 사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고, 여러 가해 학부모들 앞에서 '이 모든 것은 청구인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 다른 학생들은 상관없으니 제외시켜 달라'라고 할 정도로 자치위원회에 참석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또한 청구인의 어머니에게는 전화와 면담을 통해 여러 번 반복하여 이후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하였기에 자치위원회의 참석이 가능했다.

5. 피청구인은 이번 사건 조사를 위해 가해학생들 간의 카톡내용 및 학생들의 진술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조사를 통하여 조사 한 바, 청구인이 다른 학생들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폭력과 금품갈취, 모욕, 사이버따돌림을 주도하였고, 가해 학생들의 두 번의 만남과 세 번째의 만남 시도 또한 의도적, 계획적, 반복적, 지속적이었으며 심각하다고 판단하였

으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치위원회 회의결과 청구인에게 내린 조치는 적법하게 결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IV. 이 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

1. 관계 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22조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8조 제16조

2. 위원회의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심판청구서와 답변서에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1) 2013.3.16. 청구인 ○○○, ●●●이 올려놓은 카카오톡의 사진으로 사이버상의 다툼이 있었고, 2013.3.17.과 3.18.에 걸쳐 학생 간 폭력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가해 및 방관학생은 청구인 ○○○, ●●● 외 11명, 피해학생은 △△△이다.
- 2) 이 사건의 경우 2013.3.16.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동의 없이 청구인 ●●●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게재하게 하고, 이에 대한 피해학생의 욕설을 포함한 항의가 있었으나 청구인은 카카오톡으로 피해학생의 동의 없이 올린 사진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은 채, 피해학생의 욕설로 사이버 상으로 언쟁을 벌이는 친구들을 방관 및 방조하였으며, 2013.3.17. ○○공원에서 청구인들의 친구들을 불러 모아 피해학생 △△△과 만난 사실이 인정 된다.
- 3) 3.17. 청구인 ●●●과 피해학생 △△△은 사이버상의 일로 서로 언

쟁을 벌였고, 피해학생으로부터 먼저 머리 부분을 폭행당하여 그 복수로 40대를 때리고자 하였으며, 이날 11대를 때렸으나 청구인은 이를 방관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노래방을 가자고 해서 피해학생 △△△이 가지고 온 돈 10,000원으로 노래방에 가서 놀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 4) 3.18. 청구인 ○○○은 어제 11대를 때리고 29대가 남아 있어서 학교 수업 후 후문 앞 ○○공원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8명이 모인 자리에서 청구인 ○○○은 어제 때리고 남은 것이라며 피해학생을 29대 때리며 폭행한 사실과 청구인은 이를 방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을 보면, 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정해진 조치를 할 수 있고, 제5항에서는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적정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 2)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자치위원회의 회의개최(1차(3.26.), 2차(4.2.))를 서면통보 방식이 아니라 구두로 간략하게 시간, 장소만 알려주었으며, 자치위원회 참석 이전에 청구인의 가해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측이 청구인에게 한 조치가 여러 절차와 내용면에서 위법하고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는 우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조치를 한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 3) 학교폭력대책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에서 요구하는 적정절차가 반드시 자치위원회의 개최통지를 문서로 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한 피청

청구인은 사안 설명을 위해 가해학생들의 모든 학부모에게 내교 상담을 요청했고, 3.20.(수)~3.22.(금) 3일간 학생지원부에 찾아온 12명의 가해학생들의 부모님에게 사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으며, 청구인의 대리인도 위 기간 중 학교를 방문하여 설명을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의 대리인은 여러 가해학생 부모들 앞에서 '이 모든 것은 청구인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 다른 학생들은 상관없으니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인정되며, 이후 2회에 걸쳐 자치위원회가 개최된 사실, 또 자치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리인이 출석하여 사안에 대하여 충분히 의견진술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달리 사안에 대한 부정확한 고지와 자치위원회 참석 통지를 고지 받지 못하여 의견진술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나아가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전학조치』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보건대, 청구인이 같은 전학조치를 받은 청구인 ○○○과 비교해 볼 때 피해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을 행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 5) 청구인이 카카오톡 셀카대회를 한다고 하면서 피해학생의 승낙도 없이 피해학생의 쌍꺼풀 수술을 한 사진을 청구인 ○○○으로 하여금 카카오톡에 올리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극도의 수치심과 분노감에 폭력적인 욕설을 카카오톡에 게재함으로써 청구인 ○○○에 의한 후속적인 폭행이 발생된 것으로 학교폭력을 주도적으로 유발했음을 인정할 수 있고,
- 6) 피해학생과 청구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가까운 사이였다고는 하지만, 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인 충격 등을 완화시켜 줄 행위 보다는 청구인을 포함한 가해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주종으로 나뉘어 피해학생에 대한 폭행이 수일간에 걸쳐 행해지는 순간에도 이를 방조하거나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폭행에 가담한 정도에 있어서 결코 직접 폭행을 한 청구인 ○○○에

비해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고 단순 우발적인 1회성 폭력을 넘어선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비록 진단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청구인 ○○○의 폭행 만으로 피해학생의 상해의 정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청구인 등의 행위의 태양으로 보아 피해학생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음은 능히 짐작할 수 있고, 실제 피해학생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이 인정된다.

- 7) 한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합의도 이 사건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수차례 피해학생의 부모를 만나려고 노력을 한 점은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끝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학생은 청구인과 같은 학교에서 학습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8) 사정이 이와 같다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39호)에 의하면 학교폭력대책 및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경우 그 『조치』 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향후 입학사정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고, 또 청구인의 경우 가장 중한 조치인 전학 조치를 받은 점과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라는 낙인 등으로 인한 피해 또한 적지 않다 할 것이나,
- 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가 청구인의 학습권 보다는 피해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점이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계속하여 같은 학교에서 학습을 하게 할 경우 피해학생에게 또 다른 피해를 유발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해서 청구인이 입는 피해의 보호 보다는 피해학생을 보호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과 학교폭력의 예방이라는 공익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며,
- 10) 비록 피해학생이 폭력적인 욕설을 카카오톡에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피해학생이 청구인 등에게 언어적인 폭력을 행사할 목적에서의 의도적인 행위이기 보다는 청구인 등의 행위에 극도의 수치심을 느낀 피해학생이 자신의 분노심을 표현한 것으로서 피해학생의 폭력적인 언어가 청구인 등에 대한 피청구인의 전학조치를 감

경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조치』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